

	<b>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</b>	제 정 일	2020. 1. 1
		개정일	2021. 9. 1
		개정차수	1차
		담당부서	기획예산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의 건학이념, 사명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중장기발전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, 추진,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발전계획은 대학의 건학이념, 사명 및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전, 전략과제, 실행과제, 특성화계획, 성과지표 및 재정운영계획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말한다.

제 3조 (주관부서) ① 발전계획의 수립, 추진, 평가,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
2. 발전계획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
3. 발전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업무
4. 기타 발전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업무

제 4조 (발전계획의 수립) ①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, 중요한 대내외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수립할 수 있다.

②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.

1. 대내외 환경분석 및 구성원 의견수렴
2. 비전 및 교육목표
3.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
4. 성과지표 및 목표값
5.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
6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
③ 발전계획안의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TFT를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.

④ 수립된 발전계획안은 대학발전기획위원회, 대학평의원회 및 법인 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(개정 2021. 9. 1)

제 5조 (발전계획의 추진) ① 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에 기반하여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한다.

② 행정부서는 수립된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, 예산을 집행한다.

제 6조 (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) ① 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위원회(이하 “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총장 및 각 행정처장으로 하며,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③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발전계획 연차별 추진에 관한 사항
2. 발전계획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
3. 발전계획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기타 발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7조 (발전계획의 평가) ① 발전계획의 평가는 중간평가와 연차평가로 연 2회 실시한다.

② 중간평가는 매 학년도 1학기 말에 실시하며, 연차별 실행과제의 추진 경과 및 예산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.

③ 연차평가는 매 학년도 말에 실시하며, 연차별 세부실행계획별 추진 결과, 예산 집행 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제 8조 (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자체평가위원회) ① 발전계획의 평가를 위하여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총장이 선임한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⑥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발전계획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
2. 발전계획 연차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발전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9조 (발전계획의 개선 및 환류)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한다.

②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한다.

③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및 환류를 위하여 발전계획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별도의 TFT를 구성할 수 있다.

④ 수정 및 보완된 발전계획안의 경우 대학발전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. 다만, 수정 및 보완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이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및 법인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(개정 2021. 9. 1)

제10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